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

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(금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10월 17일

-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오영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높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2조)
- 소방활동 보건 관리 및 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충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,
 - 감염관리실 설치·운영, 방화복 전용세탁기 비치, 심신안정실 설치, 배기가스 배출시스템 설치·운영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·운영임.
 - 현재 감염관리실은 12개 소방서에 모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, 안전센터 중 40m² 이상의 공간이 확보된 28개소에 설치 중임.
 - 방화복 전용세탁기는 공간부족으로 인한 안전센터 1개소를 제외하고

전 소방관서에 설치됨.

- 심신안정실은 12개 소방서에 모두 설치되었으며, 안전센터 42개소 중 2개소는 설치되었고 8개소는 설치 중으로 나머지 32개 안전센터는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아갈 계획임.
-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은 소방청사 신축 시 설치하는 사항으로 현재 3개 안전센터가 설치 계획임.

○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등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도내 전 소방서에 설치·운영 중에 있음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의 목적 범위 안에서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.

※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안 제2조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시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대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조례 시행에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각각 소방활동 보건 관리를 위한 사항과 복지시설

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시행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안 제6조는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○ 입법예고('19. 9. 24.~'19. 10. 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수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소방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소방활동 보건 관리)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·운영하고, 유해물질 등을 세척·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·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

업 상담,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복지시설 등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·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,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시설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13조(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

무원(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·직업 상담, 취업알선,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,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의 사유서

○ 첨부제의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